



: 2018-02-20

서울 행정법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82959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처분취소소송
2016구합83488(병합)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처분취소소송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985,000,000원의 출연금환수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구 상호는 주식회사 C,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수석연구원이다.

나. 이 사건 과제 등

1) 피고는 2013년도부터 철도기술연구사업의 하나로 'D 기술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추진하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전문기관으로서, 위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E연구원을 선정하고 2013. 11. 11.경 위 연구원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 기간: 2013. 11. 11. ~ 2014. 7. 10.(총 연구개발 기간은 2013. 11. 11. ~ 2017. 11. 10.)
- 협약 당사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연구원, F(E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주관연구책임자)
- 협동(공동) 연구기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원고 회사 등

2) E연구원은 같은 날 G과 이 사건 과제 중 'D 구성품 설계 및 차량 제작기술 개발' 과제(이 사건 과제 중 제2세부과제로서, 이하 '이 사건 세부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 기간: 2013. 11. 11. ~ 2014. 7. 10.(총 연구개발 기간은 2013. 11. 11. ~ 2017. 11. 10.)



: 2018-02-20

- 협약 당사자: E연구원, G, H(G 이사로 협동연구책임자)
- 공동 연구기관: 원고 회사 등

3) G은 같은 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세부과제 중 'D 알루미늄 압출 차체 개발' 과제(이하 '원고 회사 수행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 기간: 2013. 11. 11. ~ 2014. 7. 10.(총 연구개발 기간은 2013. 11. 11. ~ 2016. 7. 10.)
- 협약 당사자: G, 원고 회사, 원고 B(원고 회사 수행 과제 책임자)

4) 위 각 협약 당사자들은 2014. 8.말 내지 2014. 9.초경 다시 위 각 과제에 관하여 협약 기간을 2014. 8. 29. ~ 2015. 6. 28.로 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3. 11. 11. ~ 2014. 7. 10.을 1차년도, 2014. 8. 29. ~ 2015. 6. 28.을 2차년도라 하고, 각 기간의 원고 회사 수행 과제를 '원고 회사 ○차년도 수행 과제'로 특정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세부과제에 관하여 2차년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였고, 100점 만점 중 49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7. 20. 및 같은 달 21. E연구원, G 및 원고 회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세부과제 등의 수행 여부에 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 회사 2차년도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연구기간 중 사용한 연구장비·재료비의 98%가 과제 종료월인 2015. 6. 사용되었고, 그나마 상당 부분은 실제 입고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조사되었다.

2) 피고는 2015. 9. 23. 위 중간평가 결과 및 위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중



단'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6. 과제 성실수행 여부 점검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세부과제에 참여한 기관 중 G과 원고 회사 측이 위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이 사건 과제 전체가 실패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제재조치평가단 회의 등을 거쳐 2016. 9. 8. 이 사건 과제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G 및 원고 회사에 대하여 2차년도 출연금을 환수(원고 회사의 경우 985,000,000원)하고 각 연구책임자인 H과 원고 B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원고 B의 경우 3년)하는 처분(이하 원고 회사 및 원고 B에 대한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자기책임원칙 위반 주장

가) 원고 회사 수행 과제는 G이 협약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일부이다. 원고 회사 2차년도 수행 과제는 40여 종의 압출재와 관련한 '압출재 상세설계 확정, 압출 성형 해석,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압출재 제작 및 소재특성 평가'였는데, 위 일련의 수행 과제는 압출재 상세설계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이는 다시 G의 차체 등 관련 단면도의 완성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런데 G은 이 사건 세부과제 2차년도 협약 기간 개시 시점(2014. 8. 29.)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2015. 2. 23.에 이르러서야 원고 회사에 단면도 일부(차체



관련 단면도)를 제공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 후 2015. 4. 29.경 위 단면도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할 수 있는 25종의 압출재 상세설계를 G에 전달하는 등 원고 회사 2차년도 수행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제 중단 무렵까지 압출재 상세설계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26종의 압출재와 관련하여서는 금형 제작까지 완료하였다.

다) G의 차체 등 관련 단면도 제공 시점 및 그 후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였던 것은 G의 차체 등 관련 단면도 제작 지연 및 후속 업무(원고 회사의 상세설계도에 대한 승인 등) 지연에 따른 것일 뿐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위에서 언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세부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관연구기관인 E연구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다) 피고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측이 협약 기간 내내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과제 수행 결과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사유로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고, 위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88호)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이 위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서 '귀책사유' 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이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람을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그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88호) 제28조 제4항은 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실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점검 및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기관 등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갑 제3, 4, 7 내지 14, 16 내지 23, 33 내지 36, 38 내지 4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 2차년도 수행과제 및 계획

① 이 사건 세부과제는 D 차체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원고 회사 수행 과제는 D 차체에 들어갈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합금 압출재를 설계·제작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세부과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2차년도 과제는 'D 구성품/단품 제작 및 성능 평가'이고, 원고 회사 2차년도 수행 과제는 'D 객차용 압출재 상세설계 및 압출재 제작'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Under Frame, Side Panel, Roof Panel, End Panel 및 하부 강도부재 상세 설계
- Sole bar, Cant rail 등 복잡한 단면의 압출성 검토를 위한 압출성형 해석
- 압출성 향상 및 치수정밀도 확보를 위한 정밀 압출금형 설계 및 제작
-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

③ 원고 회사 2차년도 수행 과제의 월 단위 수행계획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의 숫자는 개발기간 대비 월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1월차는 2014. 9.을 가리킨다).



	월 단위 추진 계획(아래 숫자는 개발기간 대비 월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세 설계(Under Frame, Side Panel, Roof Panel, End Panel 및 하부 강도부재)	■	■	■	■								
압출 성형 해석(Sole bar, Cant rail 등)		■	■	■	■	■						
정밀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	■	■	■	■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3량)						■	■	■	■	■	■	

(2) 원고 회사 2차년도 과제 수행 내역

① 원고 회사의 2차년도 상세 설계 대상인 압출재는 40여 종으로, 이는 다시 차체(Under Frame, Side Panel, Roof Panel) 관련 25종과 객차 출입문 관련 3종, 단부(End Panel) 관련 8종, 하부 강도부재(Bolster) 관련 3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위 압출재는 모두 D 차체의 구성품으로서,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 → 압출재 상세 설계(원고 회사) → 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 → 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 회사) → 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 회사)'의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③ 원고 회사는 G으로부터 2015. 2. 23.경 차체 관련 단면도 초안을, 2015. 4. 9. 객차 출입문 관련 단면도 초안을, 2015. 4. 17. 단부 및 하부 강도부재 관련 단면도 초안을 각 제공받았다(갑 제33호증, 제38호증의 1, 2). 원고 회사는 2015. 4. 29. G에 차체 관련 압출재 25종의 상세도면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5. 9. 2.경까지 압출재 40여 종의 상세 설계를 완료하였다(갑 제34호증, 제38호증의 1, 2, 제39, 40호증). 원고 회사는 그 중 G으로부터 상세도면 승인을 받은 압출재 26종과 관련하여서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과제 중단 시점까지 금형 설계 및 제작까지 완료하였다(갑 제



10호증).

④ 다만, 이 사건 과제 중단 시점 현재 원고 회사는 위 수행계획 중 압출 성형 해석과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를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과제 중단 시점까지 수행과제 중 일정 부분을 수행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G의 차체 등 관련 단면도 제공 지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제 실패에 관한 책임을 원고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에서 본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 과정에 비추어 볼 때, G의 차체 등 관련 단면도 제작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성품인 압출재를 상세 설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② 그런데 G은 2015. 2. 23.에 이르러서야 원고 회사에 차체 관련 단면도 초안을 제공하였다(그 단면도들이 확정된 것은 2015. 4. 9.이고, 그 후에도 단면도의 세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원고 회사가 차체 관련 압출재 25종의 상세 설계도를 G에 전달한 시점(2015. 4.경) 및 G의 승인을 받고 금형을 발주하여 제작까지 완료한 시점(2015. 6.경 ~ 2015. 9.경)은 위 단면도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월차 및 3월차 내지 6월차로서 위 수행 계획(상세 설계는 1월차 내지 4월차, 금형 설계 및 제작은 3월차 내지 7월차)에 부합한다.

③ 한편 G은 2015. 4. 경에 이르러서야 객차 출입문 관련 단면도(관련된 압출재는 3종), 단부 및 하부 강도부재 관련 단면도(관련 압출재는 각 8종, 3종)를 원고 회사에 제공하였다. 원고 회사가 관련 압출재 상세 설계도를 G에 전달한 시점(2015. 5.경



~ 2015. 9.경)은 위 각 단면도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1월차 내지 5월차로서 대체로 수행 계획(상세 설계는 1월차 내지 4월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회사가 원고 회사 수행 과제 관련 협약 체결 이전에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연구개발계획서(갑 제36호증)에 따르면, 원고 회사 2차년도 수행 과제 중 위 ②, ③에서 언급한 압출재 상세 설계 및 금형 설계·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차체 등 관련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압출재 상세 설계 일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비중이 적은 압출 성형 해석 등을 진행하지 않고 금형 설계·제작에 들어간 것을 탓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G의 차체 등 관련 단면도 제공을 촉구하지 아니하였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G과의 공정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차체 단면도 제공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특히 2014. 11.경 열린 2차년도 2차 공정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압출재 상세 설계를 위해 '차체 기본 도면(차체 주요 구조 및 측창, 출입문, 실내외 인터페이스 등이 반영된 도면)'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갑 제19호증의 2)], ㉔ 이 사건 세부과제와 원고 회사 수행 과제의 내용(차체 개발과 그 구성품 개발), 협약 기간(이 사건 세부과제 관련 협약 기간은 4년인 반면 원고 회사 수행 과제 관련 협약 기간은 그보다 짧은 3년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회사 수행 과제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일부임이 분명한 점, ㉕ 관계 법령에 따른 협약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의 지위(이 사건 세부과제 관련 협약의 당사자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임) 및 원고 회사 수행 과제 관련 협약에 따른 G과 원고 회사의 지위(원고 회사는 G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G은 이를 평가하여 연구비 지원중단, 개발비 삭감, 공동연구책임자 교체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G에 대하여 위 조치 이상의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3)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한지형

 판사 서정희



관계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



계평가를 한다.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 ⑪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 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88호)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에 따른 조치)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